

대전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109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109500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502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황보영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박진세

변론 종결 2021. 3. 22.

판결 선고 2021. 4.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502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내역 중 대상토지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5. 7. 접수 제2159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4,77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피고만 위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증여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시가 375,894,400원인 당진시 H 전 4,844m²(이하 'H 토지'라 한다)만 상속받게 되어 원고는 결국 피고로부터 54,773,112원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해당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해당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해당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해당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해당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762,068,270원(= 적극적 상속재산 408,407,855원 + 증여현금 204,763,767원 + 증여부동산 438,184,900원 - 상속채무액 289,288,252원)

(1) 적극재산 : 408,407,855원

① H 토지 375,894,400원

② 망인 예금 131,264원

③ 출자금 2,202,029원

④ 교통사고 보험금 중 일부 30,180,162원

(2) 소극재산 : 289,288,252원

①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한 H 토지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289,140,422원

② 지방세 147,830원

(3) 생전 증여 재산

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438,184,900원

② 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억 9,000만 원의 상속개시 당시 현가액 204,763,767원

(나)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산정(A×B)

망인이 2018. 1. 25.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인 원고, G, B, 피고가 각 1/4지분을 법정상속하였고,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1/2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액은 95,258,533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762,068,270원 $\times$ 1/4 $\times$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특별수익액(C)

B은 위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204,763,767원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상속개시 당시 가액 438,184,900원)을 각 증여받았으므로, B과 피고는 위 금액만큼의 특별수익액이 존재한다.

3) 순상속분액(D)- 이 사건의 쟁점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유류분은 민법 제1118조에서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피고, B)가 있는 이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순상속분액을 산정해야 한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 유증의 가액이 위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나) 계산

(1)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① 간주상속재산(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생전 증여액의 합계): 1,051,356,522원(= 적극재산 합계 408,407,855원 +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가액 438,184,900원 + B이 증여받은 현금의 상속 당시 환가액 204,763,767원)

② 위 산정방법에 따라 망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과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은 아래 표(금액 단위: 원)와 같다.

원고	1,051,356,522	1/4	262,839,130	0	262,839,130
G	1/4	262,839,130	0	262,839,130	
B	1/4	262,839,130	204,763,767	58,075,363,	
피고	1/4	262,839,130	438,184,900	-175,345,770	

③ 피고는 초과특별수익자이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은 175,345,770원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 G, B이 피고를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원고, G, B이 각 1/3)에 따라 위 초과특별수익분을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금액 단위: 원)와 같다.

원고	262,839,130	175,345,770	1/3	58,448,590	204,390,540
G	262,839,130	1/3	58,448,590	204,390,540	
B	58,075,363	1/3	58,448,590	-373,227	
합계	408,407,853				

④ 원고의 구체적 상속지분 : 1/2

위 표에서 B은 공제 후 잔액(①-②x③)이 남는 게 없으므로(오히려 373,227원이 모자라다1)), B도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은 원고와 G가 1:1로서 각 1/2이 되고, 피고와 B은 민법 제1008조에 의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아예 없다.

(2)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원고의 순상속분액 계산

일반적으로는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²⁾ 인바, 이 사건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순상속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극적 상속재산 중 급부의 내용이 불가분인 H 토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속분을 대입하여 금액을 산정하되,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채무와 같은 가분적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전부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판단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원고의 순상속분액 123,753,500원(㉠ + ㉢ - ㉣)은 원고의 유류분액 95,258,533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 적극적 상속재산 중 불가분 급부인 H 토지 가액 375,894,400원 ×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1/2: 187,947,200원

㉢ 적극적 상속재산 중 나머지 금전채권액 32,513,455원(= 131,264원 + 2,202,029원 + 30,180,162원) × 원고의 법정상속분 1/43) = 8,128,363원

㉣ 모두 금전채무인 상속채무액 289,288,252원 × 원고의 법정상속분 1/4 = 72,322,063원

4) 소결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액(123,753,500원)이 원고의 유류분액(95,258,533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만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정과 달리, H 토지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가 위 토지에 상속채무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H 토지에 가지는 구체적 상속분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침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과 별개의 제도나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효선

판사박상준

판사신지은

별지

- 1) B처럼 최초에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다가 2단계로 초과특별수익자가 되는 경우, 그 금액을 남은 상속인들(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G)이 다시 위 기본원칙에 따라 각 1/2씩 안분공제하면 되나, 결과적으로 원고와 G 모두 구체적 상속분 비율이 1:1로 같으므로, 편의상 계산을 생략한다.
 - 2)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3) 각주 2)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상속채권 중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피고와 B의 상속분을 부정하고, 원고에게 구체적 상속지분인 1/2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반영할 경우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액이 증액되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정도가 커질 뿐이어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다.